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증제도 안내자료

2025.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목 차 ❏

---

## I.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

1.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개요	-----	1
2. KRC신기술등록제와의 공동인증제	-----	3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4
4. 심사절차 및 방법	-----	5
5. 예정기술 공고	-----	6
6. 신기술인증서 발급 및 관리	-----	7
7. 심사 수수료	-----	7

## II. 농림축산분야 녹색인증제도

1. 녹색인증제 개요	-----	15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7
3. 심사절차 및 방법	-----	18

## III.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	-----	23
-------------	-------	----

---

---

# 1.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

---

# 1

##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개요

###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이란?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

### □ 목적 및 근거

- (목적)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근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신기술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등

### □ 신청 자격 : 기업, 농산업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 □ 신청 대상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b>농림축산식품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의 편성, 인증신기술 고시 및 인증서 발급</li> <li>· 인증신기술 연계지원제도 수립 및 운영</li> </ul>
<b>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인증제 신청·접수, 심사·평가, 등 인증제도 운영·관리</li> <li>· 인증신기술 실적관리 및 적용제품 품질평가 등 사후관리</li> </ul>

□ 인증 기준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국가기술력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품질경영체계 구축여부 및 신기술인증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큰 기술

□ 인증 기술분야 <참고 1>

대분류	중분류
1. 농업 기술 (4개)	1-1 유전자원육종
	1-2 재배·생산
	1-3 유통·관리
	1-4 생명공학
2. 축산·수의 기술 (3개)	2-1 종축·생산
	2-2 유통·관리
	2-3 동물질병·수의약품
3. 식품 기술 (3개)	3-1 식품가공·제조
	3-2 기능성·영양
	3-3 위생·안전
4. 임업 기술 (2개)	4-1 임산물 재배·생산
	4-2 임산물 가공·유통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5-1 토목·시설·환경
	5-2 농자재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6. 농림식품 융복합 (3개)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6-3 농생명 정보·전자

□ 인증 혜택<참고 2>

-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 혜택(신청시 가점 3점 부여)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혁신제품 지정 추천
- 농식품벤처육성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우대

## 2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와 KRC신기술등록제의 공동인증제

### □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와 농어촌공사 KRC신기술 등록제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동인증

- (추진내용) 농림식품신기술에 대해서 KRC신기술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KRC신기술로 등록되어 현장에서 활용
- (추진절차) 신기술인증 공고 시 KRC신기술 등록 동시 신청 → 사전 검토·심사 추진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확정공고 후 KRC신기술 등록
- (대상분야) 토목·시설·환경 분야 등 농어촌공사 현장활용 기술분야
- (신청방법)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신기술 신청화면에서 KRC신기술 등록 신청 항목 선택
- (제출자료)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 현장분석, 활용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상세내용은 4페이지 참고>

\*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사업과의 부합성 및 활용가능성,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시공방법 소요기간 등 적정성, 목적물의 유지관리 비용 등 시설물관리의 용이성 등 내용 포함

### - KRC신기술등록 제도 -

- 사업소개 :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KRC 신기술로 선정·관리하며, 등록신기술은 전국 농어촌공사 사업현장에서 우선 적용 하도록 홍보하고 촉진하는 제도
- 사업 분야 : 정부인증 신기술 및 한국농어촌공사 성과공유제개발기술
  - \* 콘크리트 보수보강, 사면관리 및 보강, 수문, 수질관리 및 개선 등 26개 분야
- 등록 혜택
  - KRC신기술관리시스템 등록되어 농어촌공사 기술이용자 홍보
  - 전국의 농어촌공사 사업현장에서 유사기술보다 우선 기술적용 검토

### 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http://www.newat.or.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화면 오른쪽 메뉴(03 기술인증) 클릭 → 접수 및 평가 진행 현황 클릭  
 → 신기술 신청 클릭 → 기본 정보 및 관련 자료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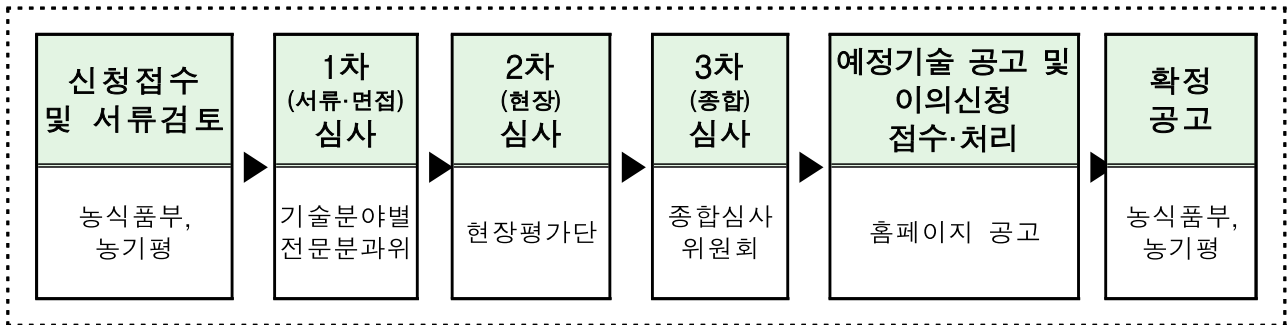
\* 기존 FRIS 회원의 경우 FRIS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http://www.newa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 시 제출) ⑤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⑥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⑦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	해당서류 보유 시 증빙자료 제출
KRC 공동인증제 신청 시	⑧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관련 자료(직전년도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일 것, 기업신용 평가등급이 B- 이상 일 것, 부도 상태에 있지 않을 것,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 ⑨ 농어촌공사 활용여부 자료(KRC 건설공사 적용현장 분석, 활용 가능 분야 및 활용 전망)	해당자료 필수 제출
참고사항	○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b>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b>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b>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b> 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4

## 심사절차 및 방법



□ 1차(서류·면접) 심사 : 전문분과위원회(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 심사내용 :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 경영성 평가<참고4>
- 심사방법 : 제출 서류 및 신청인 면접(발표)을 통해 심사 진행
- 통과기준 :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통과

□ 2차(현장) 심사 : 전문분과위원회(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5인 이상)

- 심사내용 : 1차 심사결과 확인,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 현장 적용성 평가
- 심사방법 : 신기술 적용 현장(공장, 연구소 등)에서 평가를 실시
- 통과기준 : 현장평가단 3/4이상의 찬성할 경우 통과

□ 3차(종합)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대분류 기술분야 전문가 15인 내외)

- 심사내용 : 1·2차 심사의 적절성 및 심사결과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 등을 심사
- 심사방법 : 신청기업과 해당 심사를 담당한 분과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심사 진행
- 통과기준 : 출석위원 2/3이상 동의를 통해 예정기술로 선정

## 5

# 예정기술 공고(이의신청 처리)

### □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 공고

- 심사 절차를 통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된 신청기술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고 후 의견수렴
  - 공고방법 :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간 공고
  - 공고내용 : 기술명, 기술보유자, 유효기간, 예정기술의 주요내용\*
- \* 인증 예정기술 공고 시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미공개 가능

### □ 예정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된 예정기술의 신기술 인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 이의신청 기간 : 인증 예정기술 공고 기간 3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http://www.newat.or.kr))에 접수
  - 이의신청 서류 :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 □ 이의신청 처리

- 처리절차
  - 이의신청 접수 ▶ 기술인증 신청인에게 이의사항 통보(7일) ▶ 신기술 인증 신청인 답변서 제출(7일) ▶ 전문분과위 의견 청취 및 심사(60일 기한, 필요시 연장 가능) ▶ 심사결과 통보(장관 →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 처리방법
  - 이의처리를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신규로 구성, 이의신청 사항 및 신기술인증 신청인의 답변서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확정
  - 필요한 경우 1·2차 심사를 담당한 전문분과위원장 및 이해관계자를 분과위에 참석시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 청취
  - 이의신청 수용 예정기술 : 취소기술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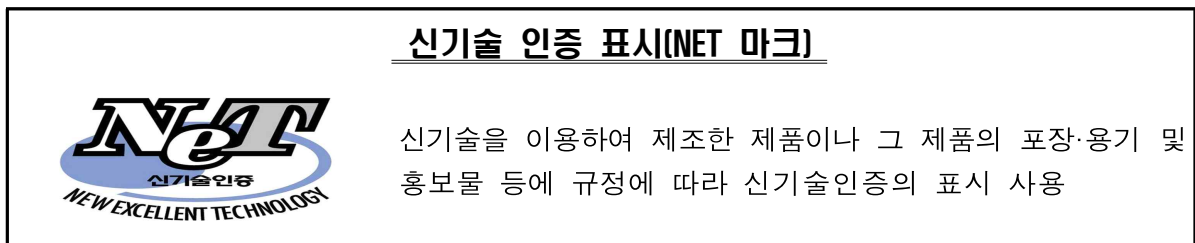
## 6

## 신기술인증서 발급 및 관리

- 농림식품신기술로 최종 확정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서 발급
  - 기술명, 기관명, 대표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장관이 발급, 인증신기술은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
  - 신기술 인증의 표시 : 인증신기술 적용제품 및 홍보물에 사용 가능

※ 농림식품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신청한 기술을 심사 추진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19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 인증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인증신기술 상용화 실적 및 인증표시(NET마크) 사용 실적조사
    - 인증 이후 후속연구, 제품화 추진 등 상용화 추진실적 및 인증표시 사용실적 조사를 통해 인증신기술 활용도 제고 및 성과분석 실시
  - 신기술 보유기관 현장조사 및 적용제품 품질조사 추진
    - 상용화 추진 실적미흡 기관 실태조사 및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 등 제재조치 가능

## 7

## 심사 수수료

- 1차(서류·면접) 심사 : 20만원
- 2차(현장) 심사 : 50만원
- 3차(종합) 심사: 20만원

※ 심사비 납부는 심사대상으로 확정 시 개별통보/ 계좌이체로 납부

◆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전문위 구성 기준)	
1. 농업 기술 (4개)	1-1 유전자원·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1-2 재배·생산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관리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 기술 등
2. 축산·수의 기술 (3개)	2-1 종축·생산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관리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치료·검역기술,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 (3개)	3-1 식품가공·제조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안전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 (2개) * 목재 생산 가공 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생산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재배 기술 등
	4-2 임산물 가공·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
5. 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 신기술 농업기계 제외	5-1 토목·시설·환경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조성·보전 기술, 농업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등
	5-3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 기계·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3개)	6-1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 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등
	6-3 농생명 정보·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틸리티스 정보화 기술, 생물 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개 기술	중분류 18개 기술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목재 관련 기술은 산림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에 따른 농업기계는 농진청 별도 시행

## 참고 2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혜택

### I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 대학, 농산업체 등</li> </ul> </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 분야 연구개발비 지원</li> </ul> </li> <li>○지원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li> <li>○기타 : 신기술인증(NET) 취득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3점 가점</li> </ul>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061-338-9700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li> </ul> </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사업화지원금 기업당 3천만원</li> <li>- 자부담 30% 포함한 지원금, 각종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li> </ul> </li> <li>○지원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내지 우편 접수 중 택일</li> <li>○기타 : 농식품분야 기술기반(특허등록, 인증 등) 창업기업 가점 부여(최대 3점)</li> </ul>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063-919-1433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첨단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li> </ul> </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분야 혁신 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li> <li>- 사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투자IR 멘토링 등 지원</li> <li>- 총 사업비 규모 : 90억원, 국고지원금 70% + 자부담 30%</li> </ul> </li> <li>○지원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내지 우편 접수 중 택일</li> <li>○기타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가점 부여(1점)</li> </ul>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063-919-1433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p>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p>	<p>○지원대상 - 농식품 쏠분야 벤처·창업기업</p> <p>○지원내용 - 기업당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 기업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사업화자금은 기 투자 받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p> <p>○지원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온라인 접수</p> <p>○기타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p>	<p>한국농업 기술진흥원 063-919-1411 063-919-1413</p>
<p>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지원 (농식품클라우드 펀딩활성화)</p>	<p>○지원대상 -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 바탕의 농식품기업</p> <p>○지원내용 - 클라우드펀딩을 위한 현장코칭, 맞춤형컨설팅 - 펀딩 성공 시 투자유치수수료 지원(100~300만원 이내)</p> <p>○지원방법 :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apfs.kr)</p> <p>○기타 : 기업의 사업현황 또는 펀딩상품 등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p>	<p>농업정책보험 금융원 02-3771-6796</p>
<p>농식품모태펀드 출자</p>	<p>○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 경영체</p> <p>○지원내용 -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및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투자대상 선정에 의함(평균 10~20억 투자)</p> <p>○지원방법 :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assist.apfs.kr)</p> <p>○기타 : 모태펀드 투자분야(11개) 중 “창업아이디어” 분야의 경우 이노비즈인증, <b>신기술인증(NET)</b>, NEP 취득 농식품경영체 대상 투자 진행</p>	<p>농업정책보험 금융원 02-3771-6883</p>

II

타 부처 지원(농식품신기술인증업체 대상)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p>중소기업 정책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p>	<p>○지원대상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특허·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등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p> <p>○지원내용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p> <p>○지원방법 : 지역본·지부별 신청</p> <p>○기타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digital.kosmes.or.kr)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 사항에서 신청일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p>	<p>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p>
<p>기술보증 기금</p>	<p>○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p> <p>○지원내용 - 해당기업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 보증 - 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마케팅 등</p> <p>○지원방법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p> <p>○기타 : 중점지원 대상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등)</p>	<p>기술보증기금 1544-1120</p>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제도 (중소·벤처 기업 부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li> <li>-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항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li> </ul> </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li> </ul> </li> <li>○지원방법 : 전문연구요원(<a href="http://www.rndjm.or.kr">www.rndjm.or.kr</a>)</li> <li>○기타 :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신제품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li> </ul>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98- 8371~8377
조달청 지정제도 (우수제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NET)적용제품 가지고 있는 기업</li> <li>- 혁신제품 지정받은 기업</li> </ul> </li> <li>○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li> <li>-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홈페이지 게재</li> <li>-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제작·배포 등의 홍보 지원</li> </ul> </li> <li>○지원방법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a href="http://shop.g2b.go.kr/link/GEEA004_01/">shop.g2b.go.kr/link/GEEA004_01/</a>)</li> <li>○기타 : 신기술(NET)적용제품 가지고 있는 기업은 품질 소명자료 제출대상임</li> </ul>	조달청 042-724- 7223,7285, 7233,7144, 7489,7461

### 참고 3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관련 서식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전년도)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 명칭		신청 기술분야 [ ]	
	기술핵심단어 [ ] [ ]		[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심사·평가비용 서류·면접심사: 200,000원 현장심사: 500,000원 종합심사: 200,000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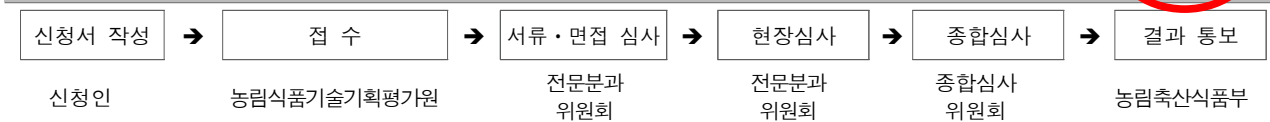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기술 설명서

(제4쪽 중 제1쪽)

1. 개발기술 핵심내용(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다.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라. 관련 산업 파급효과



## 3.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명칭 (등록명칭)	권리자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의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시험일자 (인증일자)	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내용 (인증내용)	시험결과 (인증결과)

다. 타인의 산업재산권과의 관계(자체개발이 아닌 경우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 중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4. 국내외 유사·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해당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비교항목	자사 신청기술	국내 유사·경쟁기술	선진국 유사·경쟁기술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기술명: ) (제품명: )	(기술명: ) (제품명: )	(기술명: ) (제품명: )
기술개발 완료시기	년 월	년 월	년 월
판매개시 예정일	년 월	년 월	년 월

5.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 해당되는 경우 적습니다)

가. 제품의 사진, 개략도 또는 구성도

나. 제품의 용도

다. 제품의 성능(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라. 예상 시장규모

구 분	전년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
국내(단위: 억원)			
해외(단위: 미화 백만달러)			

\* 소재, 부품 등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제품과 용도가 같은 품목의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산출

# 참고 4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심사서(양식)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서류·면접 심사·평가의견서(1차심사)

과제번호 :

기술명		
적용제품명		
기술성 평가 (100)	기술성 (20)	<input type="checkbox"/>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20) <input type="checkbox"/>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7) <input type="checkbox"/>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해당함 (14) <input type="checkbox"/>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1) <input type="checkbox"/> 국내의 유사기술보다 미흡함 (8)
	적용성 (20)	<input type="checkbox"/>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핵심기술임 (20) <input type="checkbox"/>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시킨 핵심기술임 (17) <input type="checkbox"/> 적용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4) <input type="checkbox"/> 적용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1) <input type="checkbox"/> 적용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기술임 (8)
	재현성 (20)	<input type="checkbox"/> 추가개발 없이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 (20) <input type="checkbox"/> 기술의 완성도는 약간 부족하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 (17)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완성도는 부족하나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4) <input type="checkbox"/>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기술적 보완이 있어야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1)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성도 희박함 (8)
	발전성 (20)	<input type="checkbox"/>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20) <input type="checkbox"/>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input type="checkbox"/> 향후 제한적이거나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14) <input type="checkbox"/> 향후 제한적이거나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1) <input type="checkbox"/>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8)
	파급성 (20)	<input type="checkbox"/> 핵심기술로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 기술임 (20) <input type="checkbox"/> 전문기술로 해당 산업부분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input type="checkbox"/> 전문기술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기술임 (14) <input type="checkbox"/> 단순개량기술로 적용제품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기술임 (11) <input type="checkbox"/> 아이디어기술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8)
경제성 평가 (50)	기존제품대비 성능비교(20)	( ) ( ) ( ) ( ) (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생산/가격 경쟁력(20)	( ) ( ) ( ) ( ) (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시장규모(10)	<input type="checkbox"/>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10)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7) <input type="checkbox"/>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5)
경영성 평가 (50)	기술개발력(15)	<input type="checkbox"/> 상등급 (15) <input type="checkbox"/> 중등급 (10) <input type="checkbox"/> 하등급 (5)
	품질경영체계(10)	<input type="checkbox"/> 상등급 (10) <input type="checkbox"/> 중등급 (7) <input type="checkbox"/> 하등급 (5)
	지원효과등(15)	<input type="checkbox"/> 상등급 (15) <input type="checkbox"/> 중등급 (10) <input type="checkbox"/> 하등급 (5)
	지속가능경영(10)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경영도 매우 높음 (10)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경영도 높음 (7.5)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경영도 보통 (5)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경영도 낮음 (2.5)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경영도 매우 낮음 (0)
추가 확인 사항	현장확인 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필요치 않음 *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현장 또는 시제품 등 추가확인 필요성 등 고려
	추가제출 필요자료	<input type="checkbox"/>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심사위원 : \_\_\_\_\_ (서명)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평가의견서(1차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적 용 제 품 명							
평가 항목		4년	3년	2년	1년	기타	판 정
정량적 항목	1차심사 평점	85점 이상	80~85점 미만	75~80점 미만	70~75점 미만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신청기술의 국내·외 특허 실적	등록 2건 이상	등록 1건 이상	출원 1건 이상	실적 없음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정성적 항목	국내·외 기술수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국내·외 시장규모	신규 및 수출시장	국내시장 형성	일부 시장형성	시장형성 없음	추가 인정 사유 및 기간	년
유효기간 산정		_____년 (평점 년 + 특허 년 + 기술수준 년 + 시장규모 년)/4					
인증 유효기간 평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현장·확인 평가의견서(2차심사)

과제번호 :

(변경)기술명	
적용제품명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3차심사 상정 <input type="checkbox"/> 보류 <input type="checkbox"/> 2차심사 탈락	
평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기술평가
	시제품 평가
	품질경영 체계
	지원효과 및 필요성
인증 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유효기간 평가의견 (1차 심사결과 조정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종합심사 의견서(3차심사)

과제번호	기술명	인증기간	적절성	적합성	선정여부(○,×)
신청기술에 대한 신기술 미선정 사유					
과제번호	미선정 사유				

년      월      일

심사위원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_____ (서명)
종합심사위원장	_____ (서명)	

---

## II. 농림축산식품분야 녹색인증제도

---

# 1 | 녹색인증제 개요

## □ 녹색인증이란?

- 유망한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 목적 및 근거

- (목적) 신성장동력인 유망 녹색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환경보호 등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성장을 지원
-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 □ 녹색인증 신청대상

-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 □ 녹색기술 대상범위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로 구분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물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 □ 녹색 인증기준

-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 녹색기술 인증종류 및 기준

○ 녹색기술 및 사업 인증, 녹색기술 제품 및 전문기업 확인 등 4분야로 구분

구분	인증대상	인증대상 및 기준
인증	녹색기술 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
		기술의 우수성과 녹색성을 기준으로 평가
확인	녹색기술 제품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제품생산 가능여부, 품질경영 확보 및 성능을 평가
	녹색전문 기업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사업 경과시점 및 녹색기술 매출비중을 기준으로 평가

## □ 녹색인증제도 혜택

- (녹색인증 용자지원) 산업별 보급 용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 용자 우선지원, 기술보증 중점 지원, 수출금융 지원 우대 등
- (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공공구매·국방조달심사 우대, 중소기업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 광고료 지원, 국내/외 온라인 판로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 등
- (사업화 기반 조성) 녹색기술 성능검사비용 지원, 해외 시장조사·지시화 등 지원 사업 우대 등
- (지자체 및 기타 컨설팅 지원) 경기, 전북, 부산 테크노파크 추진 지원 사업 우대(녹색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 등

## 2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http://www.greencertif.or.kr)) 접속 → 회원가입 → 녹색인증 신청 → 신청 시, 평가기관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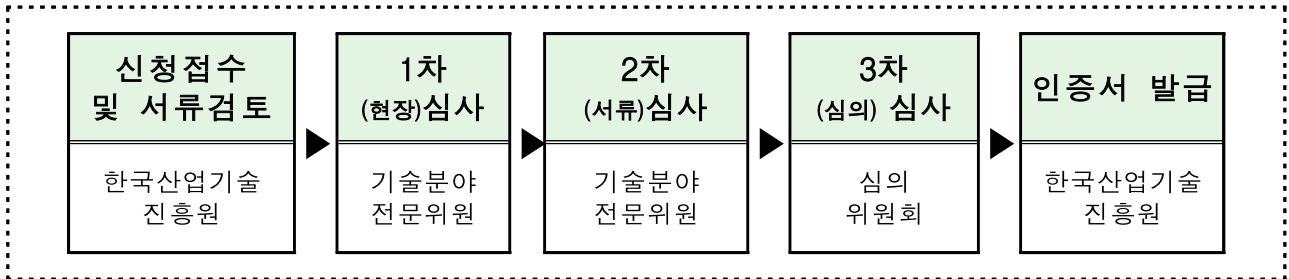
### □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수수료
녹색기술	1. 신청 기술 설명서 및 요약서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5.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1. 녹색기술 신청서류와 동일 2.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제조 계약서 등) 3. 품질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7-1호 서식 참조) 4.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7-1호 서식 참조)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3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1. 매출액 비중 내역서(별지 제3-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최근 3개월 이내)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 3

## 심사절차 및 방법

### □ 녹색인증 평가 프로세스



### □ 1차(현장) 심사(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1인 이상)

- 심사내용 : 신청 기술의 확인, 신청 기술의 활용방법, 사업화 기반,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등을 확인
- 심사방법 : 대상기업의 제조사업장 및 공장 등을 방문하여 평가
- 통과기준 : 현장평가 종합의견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

### □ 2차(서류) 심사(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5인 이상)

- 심사내용 : 기술수준의 만족여부, 기술의 우수성 및 녹색성 평가
- 심사방법 : 신청인이 참석하여 공개발표를 통해 심사
- 통과기준 :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인증 적합으로 심의위원회 상정

### □ 심의위원회

- 심사내용 :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
- 심사방법 : 인증기준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최종 인증여부 확정

# 참고 1

## 농림축산식품녹색인증 혜택(2024년도 기준)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문의
공공조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녹색인증 가점 (신인도 1.5점)	1588-0800
		다수공급자 계약	녹색인증 가점 (사전 15점, 2단계 1점)	
		우수조달물품지정	녹색인증 가점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제도	심사대상에 녹색인증을 획득한 녹색기술활용 제품 포함	
		시설공사 심사우대	녹색인증 가점 (2.0점 부여)	
	중소기업 유통센터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의무화(15%) 대상제품에 포함	042-712-5623 ,5625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소액 수의계약으로 시범 구매 대상제품에 녹색기술제품 포함	042-712-5621 ,5622	
사업화 지원	한국발명 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화연계,투자연계, 담보대출연계)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고지원율 5%P 추가 우대	02-3459-2935 ,2936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녹색인증, 녹색기업에 가점 1점	032-540-2205 ,2212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사업 (및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녹색기술 인증기업에 가점 2점	032-540-2186
금융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에 따른 지원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031-250-0121
	우리은행	우리ESG혁신기업대출	대출대상 중 하나인 녹색경쟁기업 (환경성평가등급 BBB이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함	1588-5000
	KDB산업은행	녹색인증 기업지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출금리 우대	02-787-4000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문의
금융지원	BNK부산은행	ESG우수 기업대출	녹색경영기업(환경성평가등급 BBB이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함	1588-6200
	경기도	경기 탄소중립펀드 1호	투자대상에 녹색인증기업(기술,제품 등) 및 녹색전문기업 포함	031-8008-4793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녹색인증 기업 포함, 보증한도 70억	1544-1120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간에 녹색인증 포함, 보증한도 70억	1588-6565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점지원분야. 최대대출한도 우대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통합콜센터 1357
		Net-Zero 유망기업	지원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정책자금 안내 톨센터 1811-365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에 녹색기술인증 포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녹색기술인증 등)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환경 정책자금	녹색경영기업(환경성평가등급 BBB이상) 환경성 평가지표 중 녹색인증 포함	032-540-2202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녹색인증기업 0.5% 쿼리우대	043-230-9751 ,~6
부산경제 진흥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기업에 녹색기술인증기업 포함	051-600-1714	
한국 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ESCO 투자사업 선정 시 녹색 인증기업에 가점 2점	052-920-0484	
기타	한국전시 산업진흥회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참가비, 행정서비스, 해외마케팅 지원 심사기준 중 기업경쟁력의 제품품질에 녹색인증 포함(5점 부여)	02-420-204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지원 심사기준 중 기업경쟁력의 제품품질에 녹색인증 포함(5점 부여)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기반 활용	우대조건(가점)에 녹색인증기업 포함	02-3460-7238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제작비) 지원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TV(50%) 라디오(70%) 지원 (택1) 신청자격에 녹색인증 중소기업 포함	02-731-7317 ,7319~7321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		정상기 기준 70% 할인가로 판매 신청자격에 녹색인증 중소기업 포함	02-731-7314 ,7317~7322	

구분	기관명	사업명	지원내용 및 규모	문의
기타	서울특별시 녹색산업 지원센터	서울중소기업 녹색제품 국내/외·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심사시 녹색인증 획득 여부 확인	02-6261-0881
	SBS M&C	SBS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	녹색인증 중소기업 대상 광고비 지원 정상가 기준 70% 할인	02-6262-2972
	국세청 (법인세과)	세정지원	자금유동성 지원, 경영지원 납부기가한연장, 납세담보 면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126
	국토교통과학기술 기술진흥원	건설/교통신기술	건설/교통신기술 심사시 녹색인증 기술은 해당항목(첨단기술성) 최대가점(10점) 부여	건설 031-389-6481 교통 031-389-6587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	1차 서류심사시 완성도 항목에 최고배점(15점) 부여	02-2284-1623
	창원상공 회의소	경상남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	녹색기술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055-210-3083 ,308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	녹색기술인증 인증비용 지원	033-440-2109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 돈육기업 육성사업	녹색기술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	063-711-2148
	해양수산과학기술 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사업	녹색인증 기업 대상 가점 1점 부여	02-3460-4084

※ 지원사업 내용은 조사 시점 기준 정보로 종료되었거나 사업내용 및 문의처 등 변경 가능

---

### III.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38호, 2019. 8.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12.]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6.12.]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4호, 2017.6.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본조신설 2013.12.11.]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본조신설 2013.12.11.]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3.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6.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본조신설 2013.12.11.]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본조신설 2013.12.11.]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성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본조신설 2013.12.11.]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3호, 2017.6.2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5, 2456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전문개정 2014.5.2.]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28.>

[본조신설 2014.5.2.]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2017.6.28.>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④ 삭제 <2016.12.12.>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2., 2017.6.28.>

[본조신설 2014.5.2.]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5.2.]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본조신설 2014.5.2.]

